

2025.08.20.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PA261호 (유효기간: 2026.08.19.)

담당부서: 방카슈랑스사업부



행복한 길을 걷는
나의 노후를 보다

무배당

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²⁴⁰⁴

- ※ 본 상품은 저축성 보험으로 은행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 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모집중사자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 신계약비(해약공제액)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판매사

보험사

ABL

가입 후 10년간 확정이율 적용으로
은퇴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ABL생명 연금보험

■ 계약일로부터 10년간 확정이율 적용

계약일부터 10년 이하: 확정이율¹⁾ 적용
10년 초과: 월변동 공시이율 적용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5%)

1) 확정이율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율이며, 경과기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 장기유지보너스가산

(장기유지보너스=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X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

구분		적립형		거치형
		장기유지보너스지급률		
		3년납	5년납 이상	일시납
장기유지 보너스 지급시점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2.0%	2.0%	-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2.0%	3.0%	2.0%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 의 계약해당일	2.0%	4.0%	5.0%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MIN(장기유지보너스 지급시점 전일까지 이 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 장기유지보너스 지 급시점 전일까지 납입하 기로 약정한 주계약 기 본보험료 총액)		기본 보험료

■ 유연한 자금활용(추가납입&중도인출)

- 가입 이후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을 통해 경제사정에 따라 자금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해당 기능을 통해 노후자금 외 필요한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가능

■ 추가납입

시기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종류	월정기추가 납입보험료 (적립형에 한함)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1회 납입기준 : 5만원 이상)
	수시추가 납입보험료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적립형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 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 1회 납입 가능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할 기본 보험료 X 200%-이미 납입한 추가납입 보험료의 합계
	거치형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0%이내
수수료	추가납입보험료의 0.5% or 50만원 중 적은 금액	

■ 중도인출

시기	계약일부터
한도	회당 해약환급금의 50%
횟수	보험년도 기준 연12회
단위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
수수료	연 4회 면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

-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도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 인출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시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중도인출은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되므로 중도인출시 연금지급액 및 해약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 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이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위한 안내

• 주계약

구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 나이(Y)	기본보험료
적립형	월납	3년	0세 ~ (Y-10)세	45세 ~85세	50만원 이상
		5년	0세 ~ (Y-10)세		20만원 이상
		7년	0세 ~ (Y-10)세		
		10년	0세 ~ (Y-10)세		
		15년	0세 ~ (Y-15)세		
		20년	0세 ~ (Y-20)세		1,000만원 이상
거치형	일시납	일시납	0세 ~ (Y-10)세		

※ 다만,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로 선택한 경우, 최대 연금개시나이는 "100세-보증지급기간+1"세임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사유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 금액	1,000만원 지급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연금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지급사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지급 금액	정액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 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 : 10~40년/100세)
	체증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 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 : 10 ~ 20년)
	소득 보장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 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 : 10 ~ 20년)

나.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지급 사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다만,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지급 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을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취) 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적립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연액은 직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5.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또는 10%)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7.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8.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9.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1.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후설계자금 및 연금 지급기준

계약자는 약관에 따라 연금개시 전에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 형태의 구성비율을 변경할 수 있고,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노후설계자금

지급 사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다만, 1회에 한함)
지급 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주) 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적립 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2. 노후설계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이 0%인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연액이 산출됩니다.
3. 위에서 정하는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이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확정연금형의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을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로 합니다.

2. 연금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지급사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지급금액	정액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 : 10년~40년/100세)
	체증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공시 이율의 변동을 반영(보증지급기간 : 10 ~ 20년)
	소득 보장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 : 10 ~ 20년)

나.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지급 사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때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지급 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을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다. 확정연금형

지급 사유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
지급 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라. 상속연금형

지급 사유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지급 금액	1차년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의 1년 후 이자액을 연금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다만, 「1년 후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2차년도 이후 연금연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다만, 연금개시시점 이후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인출금액 (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 수수료포함)에 부리 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연금연액을 계산함

- ㉞ 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적립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금연액은 직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5.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자가 해당 보험연도말까지 잔여 분할연금액의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또는 10%)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8.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9.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0.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30회, 50회, 6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13.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연금액 예시표

• 적립형(1형)

가입기준 : 40세 여자, 5년납, 60세 연금개시, 월납입보험료 100만원, 연연금액, 세전(단위 : 만원)

연금지급형태				5년이하 3.00%, 5년 초과 10년 이하 2.75% 적용(2025년 8월 기준)			
				10년초과 최저보증 이율 가정	10년 초과 MIN(평균 공시이율, 공시이율) 기준	10년 초과 공시이율 (2.25%) (2025년 8월 기준)	
연금개시시점의 일시금 선택시 수령 예상액				7,832	9,311	9,311	
상속연금형 사망시 일시금 수령 예상액				7,832	9,311	9,311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정액형	10년 보증		210	345	345	
		15년 보증		210	344	344	
		20년 보증		209	344	344	
		25년 보증		208	342	342	
		30년 보증		206	339	339	
		35년 보증		203	335	335	
		40년 보증		196	327	327	
		100세 보증		194	325	325	
	체증형	10년 보증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체증률(5%)	1차년 부터	142	238	238
				11차년 부터	221	369	369
		20년 보증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체증률(10%)	1차년 부터	97	165	165
				11차년 부터	230	389	389
		20년 보증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체증률(5%)	1차년 부터	101	175	175
				21차년 부터	255	443	443
		20년 보증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체증률(10%)	1차년 부터	47	85	85
				21차년 부터	289	522	522
	소득보장형	10년 보증	50%	1차년 부터	278	443	443
				11차년 부터	185	295	295
		10년 보증	100%	1차년 부터	332	516	516
				11차년 부터	166	258	258
		20년 보증	50%	1차년 부터	250	396	396
				21차년 부터	166	264	264
		20년 보증	100%	1차년 부터	277	428	428
				21차년 부터	138	214	214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196	340	340	
확정연금형	5년선택시			1,574	1,936	1,936	
	10년선택시			796	1,021	1,021	
	15년선택시			537	718	718	
	20년선택시			408	567	567	
	30년선택시			278	418	418	
	50년선택시			175	303	303	
	60년선택시			149	276	276	
	상속연금형				38	203	203

무배당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2404

- (주) 1. 연금지급형태는 계약 체결 시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구성비율, 연금개시나이를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만 복수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예시된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이율 3.00%,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이율 2.75%,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3. 실제 기재된 예시금액의 가정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적용되는 공시이율에 대한 가정으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적용되는 공시이율에 대해서는 최저보증이율, 현재(2025년 8월)의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75%), 공시이율(연복리 2.25%) 중 작은 값] 및 현재(2025년 8월)의 공시이율(연복리 2.25%)을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이율 연복리 3.00%,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이율 연복리 2.75%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4. 확정이율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율이며, 경과기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5.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6. 상기 연금예시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최저보증이율, 현재(2025년 8월)의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75%), 공시이율(연복리 2.25%) 중 작은 값], 공시이율(2025년 8월 1일 현재 연복리 2.25%)이 경과기간 동안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7. 실제 연금지급액은 공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액도 변동됩니다.
8.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서,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9.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까지 연금연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하며,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10.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3 해약환급금 예시표

• 적립형(1형)

※ 가입기준 : 40세 여자, 5년납, 60세 연금개시, 월납입보험료 100만원, 세전 기준, 단위: 천원

경과 기간	총납입 보험료	5년이하 3.00%, 5년 초과 10년 이하 2.75% 적용 (2025년 8월 기준)					
		10년초과 최저보증이율		10년 초과 MIN[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기준		10년 초과 공시이율(2.25%) (2025년 8월 기준)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3개월	3,000	2,359	78.7%	2,359	78.7%	2,359	78.7%
6개월	6,000	5,240	87.3%	5,240	87.3%	5,240	87.3%
9개월	9,000	8,142	90.5%	8,142	90.5%	8,142	90.5%
1년	12,000	11,066	92.2%	11,066	92.2%	11,066	92.2%
2년	24,000	22,976	95.7%	22,976	95.7%	22,976	95.7%
3년	36,000	35,960	99.9%	35,960	99.9%	35,960	99.9%
5년	60,000	63,438	105.7%	63,438	105.7%	63,438	105.7%
7년	60,000	66,901	111.5%	66,901	111.5%	66,901	111.5%
10년	60,000	74,861	124.8%	74,861	124.8%	74,861	124.8%
15년	60,000	76,569	127.6%	83,480	139.1%	83,480	139.1%
20년	60,000	78,320	130.5%	93,113	155.2%	93,113	155.2%

- (취) 1. 이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를 차감한 보험료에 대하여만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이율 3.00%,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이율 2.75%,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합니다.
2. 상기 표의 경과기간 10년 초과 시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25년) 평균공시이율 2.75%와 2025년 8월 현재 공시이율 2.25% 중 더 낮은 이율, 2025년 8월 공시이율 2.2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3.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4. 상기 예시금액 및 환급률은 적용금리가 변동하지 않고, 중도인출이 없으며, 보험료를 납입해당일에 납입한 경우의 금액이므로 보험기간 중 적용금리가 변동하거나 중도인출이 발생 혹은 보험료를 납입 해당일에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시금액 및 환급률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6.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7. 상기 예시된 금액은 장기유지보너스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8. 확정이율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이율이며, 경과기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무배당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2404

• 거치형(1형)

가입기준 : 40세 여자, 일시납, 60세 연금개시, 일시납보험료 1억원, 세전 기준, 단위: 천원

경과 기간	총납입 보험료	5년이하 3.40%, 5년 초과 10년 이하 2.75% 적용 (2025년 8월 기준)					
		10년초과 최저보증이율		10년초과 MIN[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기준		10년초과 공시이율(2.25%) (2025년 8월 기준)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3개월	100,000	99,178	99.2%	99,178	99.2%	99,178	99.2%
6개월	100,000	99,661	99.7%	99,661	99.7%	99,661	99.7%
9개월	100,000	100,147	100.1%	100,147	100.1%	100,147	100.1%
1년	100,000	100,638	100.6%	100,638	100.6%	100,638	100.6%
2년	100,000	103,609	103.6%	103,609	103.6%	103,609	103.6%
3년	100,000	107,010	107.0%	107,010	107.0%	107,010	107.0%
5년	100,000	116,162	116.2%	116,162	116.2%	116,162	116.2%
7년	100,000	122,391	122.4%	122,391	122.4%	122,391	122.4%
10년	100,000	137,393	137.4%	137,393	137.4%	137,393	137.4%
15년	100,000	140,255	140.3%	152,926	152.9%	152,926	152.9%
20년	100,000	143,188	143.2%	170,287	170.3%	170,287	170.3%

- 취) 1. 이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를 차감한 보험료에 대하여만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이율 3.40%,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이율 2.75%,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합니다.
2. 상기 표의 경과기간 10년 초과 시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25년) 평균공시이율 2.75%와 2025년 8월 현재 공시이율 2.25% 중 더 낮은 이율, 2025년 8월 공시이율 2.2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3.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4. 상기 예시금액 및 환급률은 적용금리가 변동하지 않고, 중도인출이 없는 경우의 금액이므로 보험기간 중 적용금리가 변동하거나 중도인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시금액 및 환급률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6.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7. 상기 예시된 금액은 장기유지보너스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8. 확정이율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이율이며, 경과기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01 보험계약사항 기본 확인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02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여야 하며 모집종사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03 청약철회 청구제도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04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05 보험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 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06 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07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08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09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10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후 2년 이내 자살 시' 지급을 제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 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2.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1)'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14 불만족 접수 안내

[불만 접수 안내]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6층 소비자부 (우)07332
-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 팩스 : 02-3787-8719
-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 e-mail : customer@abllife.co.kr
-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보호실] • 본사 02-2262-6600 / www.klia.or.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

15 보험계약관련 조회시스템 운영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abllife.co.kr(당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16 ABL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MEMO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조건으로 보험판매를 할 수 없고, 타 보험회사의 유사상품 3종 이상을 필수적으로 안 내하여야 하며, 은행의 지정된 보험판매자만이 보험판매가 가능하고, 전화 등 고객과 비대면 방식의 보험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Tel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방카슈랑스사업부 제작(2025.08.20.)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PA261호
(2025.08.20.~2026.08.19.)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모집중사자로 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매사

보험사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07332서울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47 ABL 타워
콜센터 1588-6500 방카슈랑스사업부 02-3787-7777

판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 심익필 제2025-PA261호 (2025.08.20.~2026.08.19.)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ABL생명 홈페이지(www.abllife.co.kr) 또는 콜센터(1588-6500)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ABL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